㈜000 ㈜000 간

**000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000과 ㈜000은 000 사업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다.**

2011년 00월 00일

㈜ 000 ㈜ 000

**000 사업에 관한 의향서**

㈜000(이하 “갑”)와 ㈜000(이하 “을”)은 000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키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의향서에 기술된 상호협력 내용을 기초로 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의사를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사는 000 사업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조(신의.성실)

양사는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각 당사자의 협력사항)

본 협의에 의하여 양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이동통신社에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원천 컨텐츠를 공급한다.
2. “갑”이 공급하는 원천 컨텐츠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한 특정 영역의 내용으로 하며, 향후 필요에 따라 확대한다.
3. “이동통신社” 내 서비스되는 모바일 컨텐츠의 개발 및 디자인은 “갑”과 “을”의 실무자 미팅을 통해 진행하며, 업무 추진시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 역시 실무자의 미팅을 통해 해결한다.
4. “갑”은 “을”의 기술기반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를 매월 협의된 일정에 맞게 정산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 및 수익에 대한 배분률은 추후 계약 체결시 결정키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로 1년간으로 한다.

제6조(비밀보호)

양사는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의향서가 정하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동안 소요된 당사자의 제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은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의향서의 변경)

양사는 상호 업무제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본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일)

본 의향서의 효력은 양사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의향서의 보관)

본 의향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이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